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분석 추가〉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4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08. 19.
3. 회 부 일 : 2024. 0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0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u>도로에서의 교통안전</u> 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교통안전</u> ----- ----- ----- ----- ----- -----.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10. <u>도로교통사고</u> 의 조사·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 16. (생략)	제6조(사업)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교통사고(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다)</u> ----- ----- ----- 11. ~ 16. (현행과 같음)

교통사고 통계 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사고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안전법」 제51조제1항1)에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 통계 세부항목은 ‘교통사고처리조사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37조²⁾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TCS)에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내용에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지원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³⁾

1) 교통안전법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①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하지만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업무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 작성 및 분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포괄적인 파악과 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⁴⁾

다만, 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외 사고에 관한 자료 부족과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미흡으로 인해 도로 외 사고 정보의 수집·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는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교통사고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특히 도로 외의 곳에서의 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 사고 정보의 수집에 한계가 있음.⁵⁾

4) 참고로,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498만 3,956건의 전체 사고(삼성화재) 중 77만 5,198건(15.6%)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사고로 조사된 바 있음.

5)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물적피해만 있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경찰에 신고의무가 없음.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6)에 따라 경찰청과 별도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 통계에는 경찰에서 받는 공식 통계 외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민사 종결된 보험사 통계까지도 포함되고 있으나 공단이 수집하는 보험사 통계에도 도로 외 사고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음.⁷⁾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 외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행법상 보험사로 하여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⁸⁾,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6)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작성

7) 공단은 ‘도로 외’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조사·수집단계에서 경찰청과 보험사의 정확한 ‘도로 외’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보험사에는 보험지급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명확한 도로 내·외 구분 등에 따른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8)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제기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험사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데이터 검증의 의무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